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3

발의연월일: 2024. 8. 22.

발 의 자:임오경・이기헌・이성윤

조계원 • 한민수 • 강유정

김윤덕 • 임미애 • 문대림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됨으 로써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처분에 대해 보도 또는 공표된 후 무효확인·취소판결 등이 있었을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언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 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 다.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 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법률 제 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0명"을 "60명"으로, "90명 이내의"를 "120명 이하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을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 또는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3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						
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						
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	<u>위성방송사업자, 방송</u>					
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채널사용사업자 및 공동체라					
	<u>디오방송사업자</u>					
4. ~ 21. (생 략)	4. ~ 21. (현행과 같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재위원회는 <u>40명</u> 이상 <u>90</u>	③ <u>60명</u> <u>120</u>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u>명 이하의</u>					
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① (생 략)	④ ~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	범죄혐의가 있거					

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 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 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 재를 청구할 수 있다.

<u>나</u>	형	사-	상으] 2	조치	딬	는	비	위	혐
의 9	라	관	련된	<u>티</u>	행건	성처	분	으	받	<u>았</u>
<u>다.</u>	卫	보	도	또	는	공	丑	틴	자	는
<u>그</u>	게	대	한	형	사곡	설치	-가	무	·죄	<u>판</u>
<u>결</u>	닷	는	Ó]와	. 5	등등	한	형	태	로
종	결 도	기거	나,	į	란란	<u> </u>	행정	청처	분	०]
무.	<u>ਨ</u>	}인	• \$	취소	_판	결	또:	느	이	와
동.	흥현	<u>}</u>	형티	뷔로	- 2	종 결	되	었읕)	때
에님	<u>=</u>									
									_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